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회사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요구 근거 마련〉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9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정당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정당은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

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2조의2(지급정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이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

	<u>위원회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	---

현행법은 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개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¹⁾ 그 외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 1)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②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계책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³⁾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그런데,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적발되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상태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3)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4) **법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이의신청과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 또는 회계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활동을 하던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

이에 개정안은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지속적인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선거를 앞둔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측의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 선거비용 등을 지출할 수 없어 선거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불법 정치자금 운용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가 일단 종료되면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바, 이와 같은 지급정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급정지 요청 시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승인 조치를 얻도록 하거나,⁶⁾ 지급정지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원회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고발 이후에도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JTBC뉴스, “‘부정선거’ 현수막 배후는 누구?…’의문의 정당’ 추적해 봤더니”, 2025.8.1., 중앙일보, “[단독] ‘中이 해킹한 부정선거’…APEC 경주에 반중 현수막 예고”, 2025.10.19.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지급정지 기간을 최초 6개월로 하고, 필요시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⁷⁾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 불공정거래⁸⁾ 행위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정지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있음.

《 지급정지 관련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

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핵심 목적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	선거 공정성 및 정치적 청렴성 확보
조치 주체	금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요청
발동 요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을 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치자금의 불법 수입·지출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의 고등법원 수석 판사 등의 승인조치 등과 같은 절차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급정지 해제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